



보도	2026.2.20.(금) 조간	배포	2026.2.19.(목)
----	------------------	----	---------------

담당부서	공시심사국	책임자	팀 장	김진구	(02-3145-8470)
	공시조사팀	담당자	선 임	양현덕	(02-3145-8473)

IPO를 계획중인 기업들은 과거 다수인에게 자금을 모집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공시 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하였습니다.
 -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권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상장법인의 대표적인 공시 위반 유형]

- 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 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
 - * 전매제한조치란 증권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 분할금지 등을 통해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양도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의미
- ③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 ①~③의 공시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등을 미제출하여 위반

I. 2025년에는 누가, 어떤 공시 위반을 많이 했는지?

【유형별 조치 현황】

□ '25년에는 총 88사에 대해 143건의 조치가 있었으며,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조치(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와 경조치(경고·주의)로 나뉘는데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조치(64건, 44.8%)보다 많았던 것이 특징입니다.('21~'23년에는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

* 과징금 50건, 증권발행제한 25건, 과태료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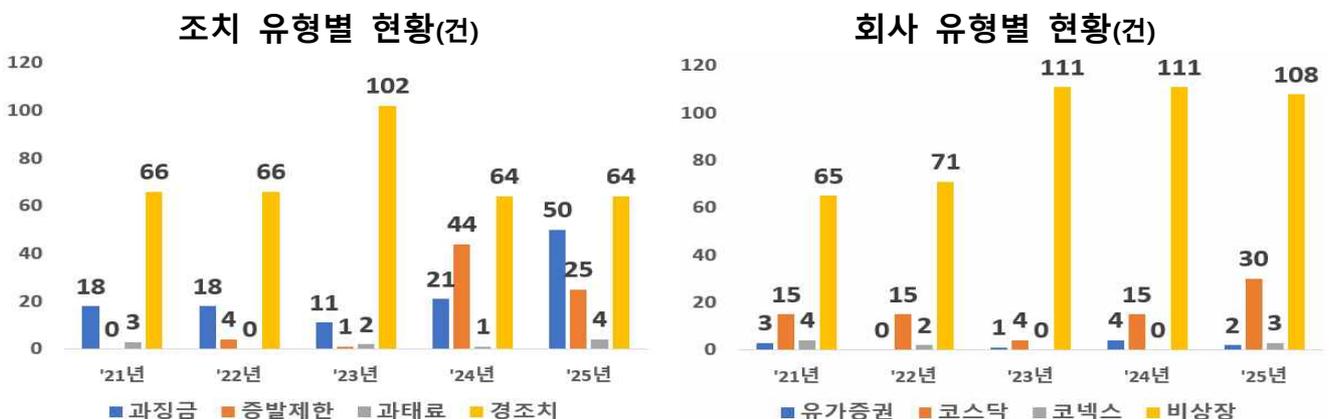
- 비상장법인이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는 과거의 주식 발행내역 등을 실사하는데, 이때 과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조치 수준이 높은 편)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이후 국내 증권시장의 상승 분위기하에서 IPO를 계획중인 비상장사가 늘어남에 따라 상장 준비과정을 통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가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상장사의 경우에는 작년(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30건)의 공시 위반이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위반(2건)은 작은 비중에 그쳤으나 그 외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시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 '24년 35건 대비 180% 증가)이었으며, 이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많았던 것이 원인입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21년~'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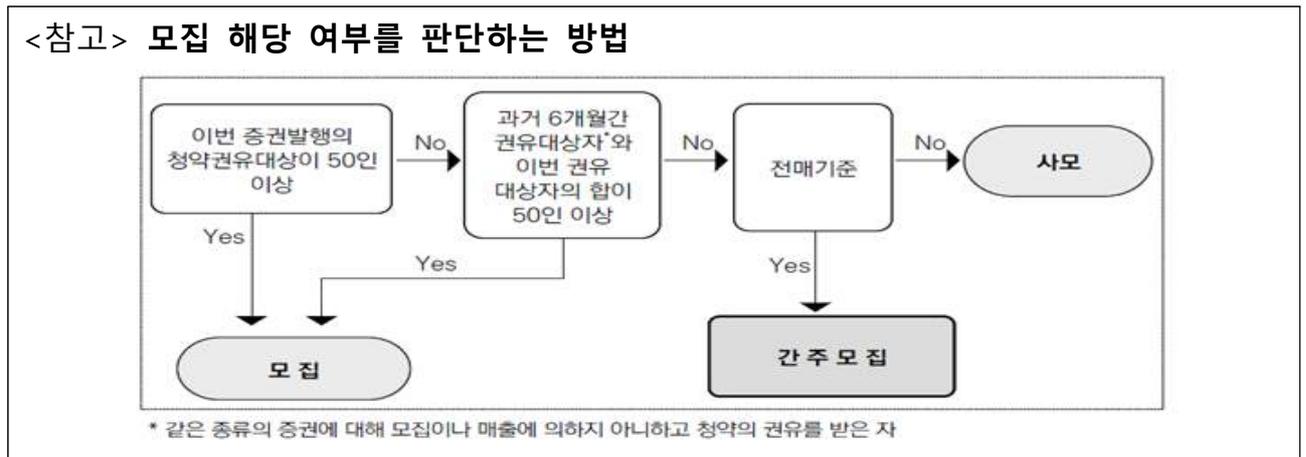
Ⅱ.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확인사항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공시유형별 제출 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공시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확인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기업공시실무안내 책자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파일 내려받는 곳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 → 기업공시제도일반 → “2025.12월 기업공시 실무안내 게시” 게시물의 첨부파일[2025 기업공시 실무안내(최종).pdf] 참조
(<https://www.fss.or.kr/fss/bbs/B0000145/view.do?nttId=209705&menuNo=200152&pageIndex=1>)

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아래의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하려는 금액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와 절차가 구분되는데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 공모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만약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였다면 매년 추가적인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가 그것인데 회사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가 대표적인 공시서류입니다.

회사의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의 「정기 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각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① **주권 상장법인**

② 각종 증권(주권 외 지분증권,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

③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④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합병 등 일부 경우에만 3일 이내 제출)

③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부과되는 공시의무 확인

-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이외에도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취득하거나 처분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추가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근 자기주식 공시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자기주식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제도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보도자료(’25.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 위반 사례

상장법인 A는 같은 날 동일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의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으나, 이 경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개별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 위반으로 조치

Ⅲ. 공시 위반 예방을 강화하되 위반 건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예정

- 금감원은 공시경험이나 노하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 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유형별 공시 위반 조치 현황(21년~25년)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조치	과징금	18 (20.7)	18 (20.5)	11 (9.5)	21 (16.2)	50 (35.0)				
	증권발행제한*	-	4 (4.5)	1 (0.9)	44 (33.8)	25 (17.5)				
	과태료	3 (3.4)	-	2 (1.7)	1 (0.8)	4 (2.7)				
	소계	21 (24.1)	22 (25.0)	14 (12.1)	66 (50.8)	79 (55.2)				
경조치(경고·주의)	66 (75.9)	66 (75.0)	102 (87.9)	64 (49.2)	64 (44.8)					
합계	87 (100)	88 (100)	116 (100)	130 (100)	143 (100)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사,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상장	유가증권	3 3	- -	1 1	3 4	2 2				
	코스닥	15 15	15 15	3 4	15 15	27 30				
	코넥스	4 4	2 2	- -	- -	2 3				
	소계 (비중)	22 (30.1) 22 (25.3)	17 (26.2) 17 (19.3)	4 (3.8) 5 (4.3)	18 (26.5) 19 (14.6)	31 (35.2) 35 (24.5)				
비상장 (비중)	51 (69.9) 65 (74.7)	48 (73.8) 71 (80.7)	101 (96.2) 111 (95.7)	50 (73.5) 111 (85.4)	57 (64.8) 108 (75.5)					
합계	73 87	65 88	105 116	68 130	88 143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정기공시	35 (40.2)	35 (39.8)	27 (23.3)	71 (54.6)	33 (23.1)					
발행공시	18 (20.7)	28 (31.8)	14 (12.1)	35 (26.9)	98 (68.5)					
주요사항공시	25 (28.7)	18 (20.4)	4 (3.4)	22 (16.9)	12 (8.4)					
기타공시	9 (10.4)	7 (8.0)	71 (61.2)	2 (1.6)	-					
합계	87 (100)	88 (100)	116 (100)	130 (100)	143 (100)					